

特別市長, 提案理由は 現行 督促狀 告知書가 發付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성 결여로 地方稅法 第27條第3項의 規定과 동일한 기간으로 延長 調整코자 하는 것입니 다.

主要骨子は 現行 納期 經過 後 7日 이내를 改正案은 納期經過 後 15日 이내로 調整하는 것입니다.

檢討意見은 本 條例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2第3項 但書規定에 의하여 課徵金 徵收에 관한 條例로 母法 但書規定은 아래 와 같습니다.

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2第3項 但書, 「課徵金은 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徵收法의 例에 따라 徵收 한다. 다만, 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 게 委任된 경우에는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法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.」 이와 같은 根據條項에 의하여 本 條例 第 3條第2項 「市長은 納付義務者가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納 付期限 經過 後 7日 이내에 10日 이내의 納付期間을 정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 다.」로 規定되어 있습니다. 상기와 같이 納 付期限 經過 後 7日 이내를 15日 이내로 延長코자 하는 것은 督促狀 告知書를 發付 할 수 있는 期間을 延長하는 것으로 督促 狀 發付期間이 너무 짧은 현실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思料됩니다.

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지금까지 交通局長과 專門 委員의 說明과 檢討를 잘 들었습니다.

다음은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관한課徵 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 이 있겠습니다.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을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님 안 제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○委員長 李永和 그러면 서울特別市自動車運 輸事業에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 한 質疑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

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○委員長 李永和 異議 없으시다 하므로 議 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관 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 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 금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2항중 “7日 이내”를 “15日 이내 (은행날인 경우에는 20日 이내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地下部分土地使用에따른補償基準에대한 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
(15時 50分)

○委員長 李永和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地下部分土地使用에따른補償基準에대한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.

(議事棒 3打)

먼저 地下鐵建設本部長이 나오셔서 條例案 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地下鐵建設本部長 禹命奎 地下鐵建設本部長 입니다. 地下部分土地使用에따른補償基準에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

都市鐵道法이 90年 12월 31日 改正이 되 었고, 이 法 施行을 위한 地下補償基準 등 에 明示되어 이는 施行令은 지난 7月 25 日 公布가 되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그 施 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이